

建議事項에 對한 當局의 見解

{ 4月21日~30日에 第4回 全國圖書館大會(館種別)에서 採擇된 建議事項을 文教部 内務部 總務處 經濟企劃院 財務部長官에게 提出하였던바 關係部 長官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回答이 있어 會員에게 알립니다 }

—編輯室—

決議文

祖國近代化를 爲한 劃期的인 課業들이 推進되는 이때에 不振했던 이명의 圖書館界에도 圖書館法과 同法施行令이 公布되어 앞날의 社會發展에 寄與하게 됨을 同慶하는 바입니다.

圖書館事業의 振興으로 產業發展과 民族文化의 向上에 寄與코자하는 우리圖書館人們은 今年 네번째의 全國 圖書館大會를 서울, 釜山, 大邱 그리고 全州에서 開催하고 그間의 經驗과 研究한바를 각己 專門分野別로 發表하여 館界가 當面한 問題點들의 打開策을 討議模索한바 있습니다.

科學文明의 세로운 知識 習得에 圖書館의任務가 重且大함을 느끼고 우리의 热과 誠을 다할것을 굳게 決議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다음에 建議하는 몇 가지 隘路點에 對하여 政府의 積極的인 協助가 이루어져 말은바 任務를 다할수 있도록 政策樹立에 配慮 있으시기 全國圖書館人의 이를으로 建議하나이다.

1965年 6月 日

社團法人 韓國圖書館協會

會長 李 弘 稹

一. 公共・大學圖書館大會 建議事項

建議事項 및 解決方案	答辯事項
<p>建議 1. 公共圖書館의 所屬廳을 一元化 해주시기 바랍니다.</p> <p>〈解決方案〉</p> <p>公共圖書館은 政府組織法이나 文教部職制로 보아 當然히 文教部의 管掌事項으로 明示되어 있음에도 不拘하고 어느 圖書館은 教育廳에 所屬되어 있고 어느 圖書館은 市郡에 所屬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教育廳傘下로 移管하여 一元화되도록措置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職種도 一元화되게됩니다. 方法으로는 所屬廳 一元化에 對한 文教·內務兩長官의 通牒만 있으면 可能하다고 生覺됩니다.</p> <p>建議 2. 文教部에 圖書館 行政을 專擔할수 있는 部署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p> <p>〈解決方案〉</p> <p>大部分의 外國에는 政府機構內에 圖書館局 또는 圖書館課가 設置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圖書館事業의 重要性을 考慮하여 文教部 社會教育課에 圖書館 行政을 專擔할수 있는 係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文教部職制改正으로 可能하다고 思料됩니다.</p> <p>建議 3. 司書敎師에 對한 教育公務員法 및 同報酬規程을 改正하여 昇進할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1. 現在 市 또는 郡에 所屬된 公共圖書館은 教育廳下에 移管치 못하고 있는 原因中 財政 뒷바침 問題가 큰比重을 차지하고 있는바</p> <p>2. 義務教育費 中에서 財源捻出은 不可能하며 단지 一般會計 轉入金에 依存하여야 될것이므로</p> <p>3. 繼續 內務當局과 折衷하고 있으나 아직 決定을 보지 못하고 있는 實情입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文教部長官)</p> <p>1. 文教部 社會教育課에 圖書館 行政을 專擔 할수 있는 係 新設要請에 對하여는 國家緊縮財政 政策上 機構擴張을 抑制하고 있으므로 係 新設이 不可能합니다.</p> <p style="text-align: right;">(總務處長官)</p> <p>※ 7月1日 公翰에는 回答이 明示되어 있지 않으나 繼續하여 當局과 折衷中에 있으므로 回信이 오는 대로 알려 드리겠습니다.</p>

<解決方案>

現在 司書教師는 特殊教師로써 昇進의 길이 막혀 있으므로 司書教師도 一般教師와 마찬가지로 1級司書教師, 2級司書教師로 區分하여 昇進의 길이 마련되도록 措置해 주시기 바랍니다.

建議 4. 地方 公共圖書館 運營에 所要되는 財源을 確保 할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解決方案>

現在 公共圖書館은 所屬이 어디던간에 財政 關係가 萎縮一路에 있습니다. 이를 解決하기 위하여는 地方交付稅法 및 同施行令에 圖書館費를 插入하여 圖書館을合理的으로 運營할수 있도록 措置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月1日 公翰에는 回答이 明示되어 있지 않으나 繼續하여 當局과 折衷中에 있으므로 回信이 오는데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表는 編輯者註.

司書教師에 따른 教育公務員法 및 同報酬規程 改正試案

{ 學校圖書館大會에서 採擇된 建議事項으로 다음과 같이 教育公務員法 및 同報酬規程 改正案을 文教部長官에게 提出하였던바 回信이 아직 없으나 繼續折衷中에 있습니다. —編輯室—

圖書館法施行令의 公布 實施에 따라 各級學校에 司書教師가 配置될 것으로 料되거나 이에 따른 教育公務員法 및 同報酬規程에 다음과 같은 矛盾이 있습니다.

一. 現行 公務員法 및 同報酬規程의 矛盾點

1. 圖書館法施行令 第6條 1·2項에는 國民學校, 中·高等學校에 司書教師를 두게 되어 있으나 現行教育公務員法의 資格基準에는 各級學校別의 規程이 없습니다.
2. 現行法의 資格基準대로하면 國民學校의 司書教師는 教育公務員 報酬規程의 別表 4의 基本 號級表(다表)에 依하여 初任俸이 國民學校 校監보다 높은 待遇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3. 現行法의 資格基準에 依하면 國民學校 教育을 專擔하고 研究할 國民學校 教師資格證 所持者에게는 國民學校 司書教師가 될 수 있는 길이 막혀 있습니다.
4.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所定의 教職科學點을 履修한 者는 2級 正教師가 될 수 있으나(教育公務員法 別表1 中等學校 2級正教師 資格基準 3項 參照)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의 教職 課程을 履修한 者가 高等學校 司書教師가 되면 高等學校 準教師의 待遇도 못받게 되어 있습니다(教育公務員 報酬規程基本 號級表 나表 參照).
5. 中等學校 正教師以上의 資格證을 所持한 現職教師가 所定의 司書教師 講習을 履修하여 司書教師

로서 任命될 경우는 既得한 號級(基本號級表 比較參照)보다 그 號級이 顯著히 格下되어야 하는 矛盾이 있습니다(1964年度까지 司書教師 養成을 336名이나 시켰으나 現職圖書館에 勤務하고 있는 實數는 194名에 不過한 理由도 이 矛盾에서오는 證據입니다.)

二. 教育公務員法(法律1647號)의 改正案(司書教師)

教育公務員法 別表 1의 司書教師의 資格基準을 改正하고자 하는 案은 다음과 같습니다.

1. 現教育公務員法 別表 1의 司書教師 資格基準

學校別 資格	中等學校	國民學校	特殊學校	幼稚園
司書教師	1. 大學卒業者로서 在學中 圖書館學科를 專攻하고 所定의 教職課程을 履修한 者 2. 中等學校의 準教師 以上의 資格證所持者로서 所定의 司書教師 養成講習을 받은 者			

2. 改正案(同法)

資格	中等學校	國民學校
一級司書教師	1. 中等學校 2級司書教師의 資格證所持者로서 3年以上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의 再education講習을 받은者	1. 國民學校 2級司書教師 資格證 所持者로서 3年以上의 教育經歷을 가지고 所定의 再education講習을 받은者